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53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사 규정

제정 2013. 7.26.

개정 2017. 7. 7.

개정 2023. 7.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"감사대상부서"이라 함은 감사를 받는 대상부서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에 따른 교육조직(단과대학, 대학원), 행정조직(처·국·행정실), 산학협력단,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(이하 "총장"이라 함)이 실시하는 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감사의 종류) 총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종합감사 : 감사대상 부서의 주기능·주임무·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- 2. 특정감사 : 대학의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- 3. 재무감사 : 대학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

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
- 4. 복무감사 : 소속 교직원(계약직원 포함)의 복무의무위반·비위사실·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- 5. 일상감사 : 주요정책의 집행업무, 계약업무,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총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
- 제5조(감사 주기 및 시기) ①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감사대상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,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② 재무감사 및 복무감사, 특정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

- 제6조(연간 감사계획의 수립) ① 총장은 매년 초에 감사사항,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,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, 감사의 범위,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등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.
 -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7조(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) ① 총장은 감사예정일 7일

- 전까지 제6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.
- 제8조(감사반의 편성 및 협동감사제도 운영)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 반을 편성하되,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감사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.(개 정 2023. 7. 4.)
 - ②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.(개정 2023. 7. 4.)
 -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반 편성 시 다른 기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30%이상 참여시키 는 협동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23, 7, 4.)
 - ④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자료 제출 요구) ① 총장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1. 출석 · 답변의 요구
- 2. 관계 서류·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

- 3.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감사의 방법 등)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장에서 실시하고,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(개정 2017. 7. 7.)

제3장 감사의 실시

- 제11조(감사 시 유의사항)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.
- ② 감사반은 감사대상부서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·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확인서 징구 등)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.
-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·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

하다.

-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·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 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,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.
- 제13조(현지조치)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·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, 행위자의 고의·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 ·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14조(감사의 종결 등) ① 총장은 제7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 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실시할 수 있다.
-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

제15조(감사결과의 보고)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목적
- 2. 감사대상부서와 감사 실시기간
- 3. 감사반의 편성
- 4. 중점 감사사항
- 5. 지적사항(조치의견 포함)
- 6. 현지조치사항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 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 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총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1. 변상명령 :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
- 2. 징계 또는 문책: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3. 시정 :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·회수· 환급·추급·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경고·주의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,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- 5. 개선 : 감사결과 법령상·제도상·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권고 :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 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7. 통보 :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8. 고발 :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9. 수사의뢰 :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④ 총장은 감사내용을 분석·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7조(조치결과의 보고)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, 그 이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,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재심의신청 등)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 등은 제16조에 따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(개정 2017, 7, 7.)
-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,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

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-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,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,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·변경하여야 한다.
- 1.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
- 2.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
- 3.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
- 4. 「행정심판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,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
- 5.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
- ⑤ 총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총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
- 제19조(직권재심의) 총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처분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·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.(개정 2017. 7. 7.)
- 제20조(조치결과의 확인) ① 총장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다.

- ② 총장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(개정 2017. 7. 7.)
- ③ 총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(개정 2017. 7. 7.)
- 제21조(집행불능사항의 처리) 총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,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.(개 정 2017. 7. 7.)
- 제22조(감사결과의 공개)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2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3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4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

정되는 정보

- 5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6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,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.
- 제23조(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총장은 감사처분, 재심의 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결과 조치의견 및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
- 2.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과 관련한 사항
- 3. 제19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
- 4. 제21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
- 5.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
- 6. 제27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
-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.(개정 2023. 7. 4.)
-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내·외 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

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(개정 2023. 7. 4.)

-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

- 제24조(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) 감사대상부서 감사결과 교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경미한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5조(면책요건) ① 면책은 교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.
- 1. 공익성 :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교직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
- 2. 타당성 : 법령상의 의무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
- 3. 투명성 : 의사결정의 목적·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 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금품을 수수한 경우
- 2. 고의 또는 중과실,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
- 3.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4.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
- 제26조(면책신청)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 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가 종료 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.
-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'적극행정 면책신청서'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'적극행정 면책검토서'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
- 제27조(면책심사 및 처리) ①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2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-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'면책심사 결과표'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, 해당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28조(비밀의 유지) 감사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감사개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그 밖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관계 법령에 따른다.

부칙 <제202호, 2013. 7. 2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3호, 2017. 7. 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3호, 2023. 7. 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재심의 신청서

<u> </u>						
1.	주 소 (기관의 소재지)					
신 청	부 서 명			직 명		
인	성 명			전 화 번 호		
2.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				·		
3. 자	3.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					
4. 김	4.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					
서울	-과학기술대학교 🌣	행정감사 규정	제18조제1항에 대	다라 관계서	류를 첨부하여	위와
같이	재심의를 신청협	나다.				
			년	월	일	
			신청인		(인)	
※ 첨부서류 : 표지 포함 장						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적극행정 면책신청서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사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	청 인	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(인)
심 사	대상자	
감	사 명	감 사 감사자
감 사 지적사항		
면책 심사 신청 사유	공익성	
	타당성	
	투명성	
신 청 인 의 견		

※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

[별지 제3호서식]

적극행정 면책검토서

감 사	부 서 명	감사 기간	
건 명			
신	청 인		
심 사	대 상 자		
징계양정(안)			
비우	H 내 용		
	공 익 성		
신 청 사 유	타 당 성		
	투 명 성		
	공 익 성		
감 사 반 장	타 당 성		
검 토 의 견	투 명 성		
	종합의견		

면책심사 결과표

건 명				
신 청 인				
심사대상자	소속	직위(급)	성 명	
심 사 결 과				

서약서

, ,	
소 속:	
직 명:	
성 명:	
상기 본인은 () 감사요원으로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	
년 월 일	
서 약 자 : 직 성명	(인)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	